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598호
2. 발 의 자 : 이새날 의원
3. 발의일자 : 2024년 2월 5일
4.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II.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3국이나 한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를 포함한 북한배경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관내 북한이탈 청소년 학력인가 대안학교(여명학교)의 부지 이전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함.

III. 제안이유

- 북한배경 청소년(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과 제3국·한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이질성과 학업 결손, 정서·심리적 어려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의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더욱이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까지 겪고 있음.

-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해 왔으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북한이 아닌 곳(제3국, 한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교육지원제도 전반에 있어 소외되고 있고, 다수의 북한이탈 청소년은 경제적 이유로 보충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며, 북한배경 청소년의 전환기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사회적 관심 부재와 자원 부족,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출생지나 경제·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 이송처 : 국회,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통일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교육개발원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결의안은 2024년 2월 5일 이재날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98호로 발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결의안은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관련 법령의 개정과 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내 유일한 북한이탈 청소년 학력인가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지 이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결의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학계 연구나 언론보도를¹⁾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이탈 주민과 그 가족이 경제적 곤궁(困窮)이나 문화적 차이,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 특히,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이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등(이하 ‘북한배경 청소년’이라 한다)은 교육내용의 이질성,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문제에 따른 학업 중단 문제, 입국 과정에서 겪은 학업 공백과 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남북하나재단의 「2022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서²⁾ 조사

1) 경북일보(2020.7.29.), “'기초학력 부족' 탈북청소년 학업중단을 증가”; 조선일보(2019.10.18.), “독일 연구팀 "탈북 청소년, 남한 청소년보다 '외상후 장애·우울증' 더 심각””; TBS(2023.1.12.), “탈북학생 63%, 수도권 거주…교육 현장 다녀와보니” 등

2) 남북하나재단(2022.12.), 「2022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26쪽을 참조.

대상 탈북청소년의 23.6%,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조사 대상 탈북 청소년의 29.6%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1] 학교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상위 5순위)

(단위 : %)

Base=재학생	별 어려움이 없음	학교 수업 따라가기	친구 사귀기	학교생활 규칙 지키기	선생님들과의 관계
전체	62.9	23.7	4.4	1.8	0.7
연령	초등연령	15.3	10.8	0.0	5.8
	중등연령	16.5	4.0	2.2	0.9
	고등연령	29.6	5.2	2.3	1.2

자료 : 남북하나재단(2022.12.), 「2022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26쪽.

-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배경 청소년이 겪고 있는 교육적 측면의 문제는 2020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33%가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점,³⁾ 탈북청소년 중 북한이나 제3국에서 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이 각각 31.8%와 4.5%에 불과하다는 점⁴⁾ 그리고 탈북청소년 생애사 연구 결과⁵⁾ 등을 종합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배경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도 극복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시행한 「2022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⁶⁾ ‘북한이탈주민을 어떠한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에 동의한

3) 제시된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윤인진·한기덕(2022)의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2권 제3호, 65-103쪽을 참조.

4) 남북하나재단(2022.12.), 「2022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21-22쪽을 참조.

5) 2010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는 1,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중단연구(2010~2015년, 2016~2021년)을 의미함. 동 연구에서는 북한배경청소년이 가정의 경제적 사정을 성장기부터 이해하고 강제적인 주체성을 가지게 되는 문제, 일부 학생이 북한배경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왕따를 경험하는 사례, 언어의 역량 차이로 인해 삶의 전환을 경험하는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남신동 외(2022),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중단연구(VII)」를 비롯하여 해당 중단연구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를 참조.

6) 한국행정연구원(2023.1.),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70-71쪽과 286쪽 참조.

응답은 전체의 22.2%로 나타나 전과자와 성소수자·정치적 극단주의자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23 통일인식조사」에서도⁷⁾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라는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19%에 불과했는바, 여러 통계를 통해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리 사회가 느끼고 있는 심리적 장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북한배경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과 체계적·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촉구하고자 하는 동 결의안의 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 1)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 확대를 요지로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촉구에 관한 검토
- 동 결의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되는 교육 지원 대상을 제3국이나 한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호 대상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⁸⁾ 보호 대상자의 교육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⁹⁾ 규정하고

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3.12.), 「2023 통일인식조사」

8)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교육지원)은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나이와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경비 지원과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4조의2는 정착지원시설 내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하여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24조의3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를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가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있습니다.

- 이를 기초로 정부는 보호 대상자에게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한 대학 수업료 등의 보조나¹⁰⁾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고등학교·대학교 입학전형의 특례¹¹⁾ 등의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법」이 보호 대상자의 범위를¹²⁾ 당사자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로 한정하고, 개별 법령에서도 대부분 특례나 지원 적용 대상을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제3국이나 한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기존의 정책·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2] 2023년 탈북학생(전국)의 출생 국가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북한 출생	72	(17.1)	149	(29.0)	258	(37.7)	33	(21.9)	512	(28.9)
중국 등 제3국 출생	349	(82.9)	364	(71.0)	426	(62.3)	118	(78.1)	1,257	(71.1)
계	421	(100)	513	(100)	684	(100)	151	(100)	1,769	(100)

각주 1 : 구분에 따른 '북한 출생'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서 출생한 학생이고, '중국 등 제3국 출생'의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을 의미함.

각주 2 : 기타학교는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함.

자료 : 교육부(2023), 「2023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자료를 정리한 것임.

○ 이처럼 전체 탈북학생 중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보다 제3국에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10) 「북한이탈주민법」과 같은법 시행령,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등에 따라 보호대상자는 중학교와 국공립대학 등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받고, 사립대학 등에 입학하는 경우 수업료 등의 50%를 국고에서 보조받음.

11)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따른 특례)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입학전형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에 따라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이 됨.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과 제30조제8항에 의해 대학 또는 대학원 정원 외 인원(일정 비율 내에서)으로 산정되어 개별 대학이 개설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을 지원할 수 있음.

12)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는 보호대상자를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여 제3국이나 한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

태어난 학생이 더 많음을 고려할 때 동 결의안의 주장과 같이 현행 교육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북한배경 청소년에게 교육 지원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이미 정부는 2022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한 바 있고,¹³⁾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에서도 탈북학생을 “본인이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제3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정의하여 탈북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¹⁴⁾¹⁵⁾
- 이와 같은 범정부적인 정책 기조와 방향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한 교육 지원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동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여명학교 이전을 위한 지원대책 촉구에 관한 검토

- 한편 동 결의안은 여명학교의 이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 여명학교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북한배경 청소년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가된 형태의 대안교육기관(2010년 인가)으로,¹⁶⁾ 2005년 개교 이후 2023년 9월까지 총 40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¹⁷⁾

○ 그러나 해당 학교가 임대인으로부터 교사(校舎)의 임대 기간 종료를

13)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3. 1.] [대통령령 제32507호, 2022. 2. 28., 일부개정] 관련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6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15)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부모 중 1명 이상 북한이탈주민인 학생도 탈북학생 교육지원 대상자로 포함하여 탈북학생 대상 학습멘토링 여름방학학교나 한국어 교실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의원(이승미의원) 요구자료 제출(3526번), 학교지원과-21485, 2023.12.29.)

16) 시의원(이승미의원) 요구자료 제출(3526번) (학교지원과-21485, 2023.12.29.) 참조.

17) 여명학교 홈페이지, <http://www.ymschool.org/about/graduate.php> (검색일 2024-02-19)

통보받으면서 학교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수년간 이전지를 물색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매번 학교 이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8월 염강초등학교 이전적지에 여명학교가 임시 이전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 허가를 승인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현재 여명학교 부지에는 향후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본원이 이전될 예정이고,¹⁸⁾ 관련 공사가 2026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어서¹⁹⁾ 사용 허가가 만료되는 2026년 2월 이후부터는 부지 사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표-3] 여명학교 이전 추진 경과

일자	내용
'18. 3.	민간 및 서울시교육청 부지 검토 → 2018년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무산
'19. 10.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부지 검토 → 공청회에서 주민 반대로 무산
'20. 8.	A구 내 미개설학교용지 활용방안 검토 →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
'20. 11.	관내 아동복지시설 내 이전 검토 → 대내외적 여건에 따른 협의 무산
'20. 12. 16.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김소양 의원 5분 자유발언 (여명학교 건물 임대 만료에 따른 지원대책 필요)
'21. 8. 23.	여명학교 부지 이전 계획 관련 교육청 예산지원 가능성 검토 → 해당 없음
'22. 8. 17.	교육감-여명학교장 간담회(여명학교 부지 이전 등 관련 검토 요청)
'22. 8. 25.	국회의원-교육감 간담회 → A구 내 미개설학교용지 이전 추진 관련 주민 반대가 관건
'22. 10. 21.	A구 내 미개설학교용지 매입방안 검토 → 일반입찰 낙찰 보장 및 수의계약 불가
'22. 12. 12.	교육감 지시사항(여명학교 이전을 위한 추가적인 법령 검토 등 요청)
'23. 1.	임시 사용 공간 검토 요청(여명학교 → 서울시교육청)
'23. 3. 27.	이전적지(舊 염강초) 임시 사용에 관한 교육감 결재

18) 서울시교육청(학교지원과)이 지난 제321회 정례회(2023.11.) 당시 보고한 「폐교재산 활용계획 업무보고」에 따르면, 염강초등학교 부지는 2023년 유아교육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용역(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 본원 이전·본원 설치에 따른 기능 구조화를 중심으로) 결과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 본원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염강초 이전적지 활용 계획이 2024년 상반기 중 수립될 예정임.

19) 시의원(이승미의원) 요구자료 제출(3526번) (학교지원과-21485, 2023.12.29.) 참조.

일자	내용
'23. 4. 21.	강서양천교육지원청, 舊 염강초 임시 사용 허가 완료

자료 : 시의원(이승미의원) 요구자료 제출(3526번) (학교지원과-21485, 2023.12.29.)를 정리한 것임.

- 현재까지의 이전 추진 경과를 고려할 때 여명학교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2026학년도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신규 이전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점에서 여명학교 이전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동 결의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여명학교의 이전부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며, 통일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대외협력담당관-1308, 2024.2.15.)²⁰⁾

- 3) 북한배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검토

- 이 외에도 동 결의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 현행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제도는 크게 통일부(남북하나재단)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지원 대상자의 가족 형태에 따라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 관련 교육 지원 제도가 보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지원 제도는 학습 멘토링이나 보충 수업, 진로·직업 체험 지원,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 고교·대학 입시 등에 있어 적용될

20) 의원발의 결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1308, 2024.2.15. 참조)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Affirmative action)²¹⁾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통일부의 교육 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3국이나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 중 부모 모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에 있어서는 수업료 지원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4]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주요 정책 현황

주요 정책	내용
1.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했던 학력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하여 학교 진학 또는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고등학교 이하 학력은 시도교육감이, 전문대학 이상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함.
2.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교 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업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함.
3. 북한이탈주민 대학 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교육)대학이나 교육대학은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를 지원함. (다만,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시설 등은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함.) ※ 국공립대학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 정부에서 50% 보조
4. 대안교육학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탈북청소년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운영 •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의 운영 지원 ※ 통일부가 지원하는 인가 대안학교 :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교육지원제도"를 정리한 것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education/> (검색일 2024-02-20)

- 물론, 현재도 교육부가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포함하여 탈북학생을 관리·지원하고,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 자녀 전체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과 화상영어 교육 및 학습지 방문교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21)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란 과거에 행해진 차별에 대한 시정뿐만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인해 현재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거나 방지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취해지는 제도나 절차의 조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일환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장애인을 위한 고용의무제 등을 시행하고 있음. (문미경 외(2013),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정리한 것임.)

해당 정책은 남한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청자 중 일부만 시혜받을 수 있는 등 보편적인 교육 지원 정책으로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동 결의안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이 함께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에 있어 기존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하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앞서 언급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해야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북한배경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북한배경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의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대외협력담당관-1308, 2024.2.15.).²²⁾

- 이상으로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22) 의원발의 결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1308, 2024.2.15. 참조)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79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적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보호대상자의 학력 진단·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① 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학습·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보호대상자로 한정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만 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
 - 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 ② 학교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운영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운영이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예산 집행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호대상자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교육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